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5
----------	-----

2025. 8. 29.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5. 8. 14. 김광심 의원 대표발의(11명 발의)
- 나. 상정의결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9.)
 -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김광심 의원)

- 유아기의 아동이 자연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유아 숲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및 운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유아 숲 교육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가. 제정 취지 및 배경

○ 산림교육법 제정

- 2011년 정부는 국민들이 산림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지식을 습득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가짐으로써 산림을 지속 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교육법”이라 한다)을 제정함.

○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한 지방자치단체별 재량 범위

- 2018년 정부는 유아숲교육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개요

- 2025년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 <산림교육 표준지침> 등을 참조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안내서를 발간하였으며, 여기에 소개된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개요는 다음과 같음.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개요>

교육대상	유아(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		
교육인원	유아반 1개 학급 단위(20명 내외)	교육시간	1회 60분 내외
교육담당자	담임교사, 유아숲지도사		
교육목표	숲과 나무의 중요성 및 사회적 가치를 알고, 숲을 가꾸고 지키는 법을 배움		
교육내용	나무심기, 수목살림, 목재사용, 산림보호와 탄소중립 간의 관계		
교육방법	• 그림책 활동(사전, 본과정, 사후 모두 가능) • 역할놀이 • 자연관찰 • 미술 및 목공놀이 • 이야기 나누기 • 퀴즈와 게임 • 노래 • 캠페인		

나. 검토 내용

○ 제정 목적

- 안 제1조는 이 조례를 제정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유아가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에 있음을 명시하는 것임.

< 목적 규정 비교 >

원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숲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교육을 통하여 <u>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u> 을 목적으로 한다.

※ 비교 대상인 부분

- 다만, 상위법령인 산림교육법에서 유아숲교육의 주요 개념이 포함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음.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0호]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u>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u> 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 위 내용을 참조하여 다음 A안 또는 B안 중에서 더 나은 표현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수 정 의 건	
A안	유아가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 -----
B안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 -----

○ 용어 정의

-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는 규정이며, 그 내용은 적절한 것으로 보임. 다만,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문구를 정비하고, (예: 뜻→뜻은) △상위법령에서 유아숲체험원을 정의하고 있는 규정을 정확하게 기술하고(제12조→제12조제1항), △산림교육법에 부합하도록 교육장소를 제한하지 않는 것(숲에서→삭제)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견을 제시함.

< 용어 정의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건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유아숲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림교육 중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p> <p>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지도·교육 시설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유아숲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림교육 중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p> <p>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지도·교육 시설을 말한다.</p>

※ 문구 정비

- 특히, 산림청에서 소개한 유아숲교육 프로그램 표준안에 유아숲교육의 교육방법을 기술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아숲교육은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전인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으며, △유아들이 쉽고 재미있게 숲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방법들이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어 (숲에 가기 전에 사전활동, 숲에서의 본과정 활동, 숲에 다녀온 후 사후활동) 장소를 제한하는 것이 도리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임.
- 프로그램 홍보 차원에서 숲에 직접 방문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넣은 홍보성 문구와 법적 제한을 두는 효력을 가지는 규정은 구별되어야 할 것이므로, 장소를 제한할 타당한 구체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구청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노력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제시한 것이고 타당하다고 보임.

○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권한,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¹⁾, 유아숲체험원 관리·운영의 위탁 등을 규정한 것임.

1) 등록기준

- 산림교육법에 따르면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은 [A] 원칙적으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정해진 대로 준수하여야 하지만, [B] 시·도지사의 경우 특별히 그 등록기준 중 규모 또는 인원 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제13조제3항에 명시되어 있고, 서울특별시의 경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체험원 규모 기준이 되는 최소 면적을 5,000㎡이라고 완화하여 정하였음.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① ~ ② (생략)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 로 정할 수 있다. 1.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9. 30.] [서울특별시조례 제9383호]
제6조(유아숲 체험시설의 조성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지역 특수성을 고려하여 유아숲 체험시설의 규모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아숲체험원 : 5천제곱미터 이상

- 위의 규정에 따르면 강남구의 경우 [B]를 적용하여야 더 작은 규모의 시설도 유아숲체험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짐.

[붙임 3] 서울특별시 유아숲체험원 현황 (2025. 6. 기준)

- 서울특별시 유아숲체험원 중 매봉산 유아숲체험원(중구, 면적 5,000㎡), 영등포공원 유아숲체험원(영등포구, 면적 6,000㎡) 등은 위에 언급한 완화 규정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설립이 가능하였음에 유의하여야 함.
- 이 조례안의 입법 취지가 [A]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을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정하여진 그대로 두겠다는 것인지, 그보다 완화된 [B]를 적용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그에 따른 수정의견은 다음과 같음.

<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규정 비교 >

원 안	
<p>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①(생략) ② 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⑤(생략)</p>	<p>[A] 수정의견 [A] 등록기준 규모: 1만㎡ 이상</p> <p>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①(생략) ② 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⑤(생략)</p>
	<p>[B] 수정의견 [B] 등록기준 규모: 5천㎡ 이상</p> <p>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①(생략) ② 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경우 「서울특별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③~⑤(생략)</p>

- 안 제4조제4항 유아숲체험원 관리·운영 업무 위탁의 경우 다른 업무와 달리 산림청장은 <산림교육 업무 위탁 고시>를 하게 되어 있으므로, 구청장이 외부 위탁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수하여야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유아숲교육 활성화 사업 추진

- 안 제5조는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였으며, 다른 자치구에서 시행 중인 사업과 거의 비슷함.

○ 유아숲교육 협력체계 구축

- 안 제6조는 유아숲교육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협조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임.

다. 종합 의견

○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한 근거 마련

- 2025년 6월 기준 서울특별시에서는 다양한 산림교육이 시행되고 있으며, 유아숲체험원은 74개소가 있고, 그 중 강남구에는 다음과 같이 대모산 유아숲체험원(일원동), 해찬솔 유아숲체험원(세곡동) 2개소가 존재함.



- 연구에 따르면 유아들이 숲의 중요성을 배우고 직접 숲을 체험하면서 또래들과 어울리면 사회성 발달, 집중력 향상, 정서적 자아 성숙에 도움이 되고, 자연에 대한 관심과 생명 존중 정신을 기를 수 있으며, 스트레스 감소와 체력 향상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조례안 제정을 통하여 강남구에서 성장하는 유아들을 위한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는 한편 유아숲체험의 기회가 확대된다면 바람직할 것임.

※ 관계 법령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0호, 2021. 6.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림교육”이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계적으로 체험·탐방·학습함으로써 산림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산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며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산림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유아숲지도사: 유아(「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산림교육을 통하여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全人的)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사람

제12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등) ①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함으로써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지도·교육하는 시설(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하려는 자는 유아숲체험원의 명칭·소재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산림청장

2. 법인 또는 개인이 조성하는 유아숲체험원: 시·도지사

④ 시·도지사는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유아숲체험원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⑦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조세감면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및 한국숲사랑청소년단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에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에 관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장, 유아숲체험원의 장, 산림교육센터의 장,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장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이 법에 따른 산림교육의 진흥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제12조제2항에 따라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1. 16.] [대통령령 제33858호]

제13조(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및 등록사항)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이하 “유아숲체험원”이라 한다)의 등록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아숲체험원의 대표자 또는 법인명
2. 유아숲체험원의 토지 명세 및 시설현황
3. 유아숲지도사 채용현황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별표 3 제2호가목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기준
2. 별표 3 제4호가목2) 및 3)에 따른 유아숲지도사 인원 기준

제18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
3.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한 지도와 명령 및 시정 또는 운영정지 명령
4. 법 제18조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장에 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5.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 취소에 관한 청문
6.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2.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3.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의 교부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운영·관리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센터의 운영·관리
6. 제9조제3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③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산림교육 업무 위탁 고시>

※ 참고 자료

[붙임 1] 각 지방자치단체별 유아숲교육 관련 조례

(2025. 7. 기준)

순번	지방자치단체	법령명	제정년도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4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4
3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021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4
5	서울특별시 중구	서울특별시 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6	서울특별시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5
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5
8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강릉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5
9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0
10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원주시 유아숲 교육 활성화 조례	2023
11	경기도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9
12	경기도 광주시	광주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13	경기도 부천시	부천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4
14	경기도 수원시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2018
15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2022
16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023
17	경기도 평택시	평택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021
18	경기도 하남시	하남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2022
19	경상남도	경상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
20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4
21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023
22	경상북도	경상북도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2017
23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군 유아숲체험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24

24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	2021
25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	2024
26	광주광역시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4
27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4
28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산림교육 및 유아숲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2025
29	대구광역시 서구	대구광역시 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5
3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유아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2021
31	대전광역시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020
32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2021
33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
34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4
35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산림교육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2023
36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7
37	전라남도	전라남도 유아숲교육 활성화 조례	2017
38	전라남도 목포시	목포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4
39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40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3
41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 조례	2019
42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022
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산림교육활성화에관한조례	2020
44	충청남도	충청남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
45	충청남도 서산시	서산시 유아 숲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4
46	충청남도 아산시	아산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5
47	충청남도 천안시	천안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4
48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군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2
49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군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2024
50	충청북도	충청북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8

[붙임 2] 대통령령 제33858호에 따른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4.9.18.>

유아숲체험원의 등록기준 (제13조제1항 관련)

1. 유아숲체험원의 입지조건

- 가. 유아숲체험원은 숲의 식생(植生)이 다양하여야 하고, 숲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 나. 유아숲체험원은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수평거리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 다. 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지역에서부터 1km 이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유아숲체험원의 규모 및 시설

- 가. 유아숲체험원의 규모는 1만㎡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유아숲체험원은 다음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1) 야외체험학습장: 숲체험, 생태놀이, 관찰학습 등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 규모는 유아숲체험원 전체 규모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 2) 대피시설: 비, 바람 등을 피할 수 있는 시설로서 목재구조 간이시설이나 임시시설이어야 한다.
 - 3) 안전시설: 위험지역에는 목재로 된 안전펜스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유아숲체험원에 화장실이나 의자, 탁자 등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입지의 특성에 맞게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을 것
 - 2) 자연친화적인 간이시설 또는 임시시설일 것

3. 유아숲체험원 운영 프로그램 및 교구 등

- 가. 계절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 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교구가 적정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 다.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간이 의료기구와 소화기 등 비상재해 대비 기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4. 유아숲체험원의 운영인력

- 가. 유아숲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인원의 유아숲지도사를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 1)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5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1명
 - 2)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26명 이상 50명 이하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2명
 - 3) 유아의 상시 참여인원이 51명 이상인 경우: 유아숲지도사 3명
- 나.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숲지도사 외에 보조교사가 선정·배치되어 있어야 한다.

5. 그 밖의 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아숲체험원 운영 기준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붙임 3] 서울특별시 유아숲체험원 현황 (2025. 6. 기준, 서울특별시 공원여가사업과)

연번	관 리 청	유아숲체험원명	위 치	규모(㎡)	문의처
1	동부공원 여가센터	서울숲공원	성동구 성수1가 685-124	10,000	460-2941
2	중부공원 여가센터	한남	용산구 한남동 772-1	10,000	3783-5994
3	서부공원 여가센터	보라매공원	동작구 신대방동 산143	10,000	300-5574
4		월드컵공원	마포구 상암동 1538	10,000	
5	북부공원 여가센터	북서울꿈의숲	강북구 번동 90	12,800	2289-4051
6	종로구	송인공원	종로구 송인동 58	15,000	2148-2872
7	중구	매봉산	중구 신당동 372-2852	5,000	3396-5882
8	용산구	응봉공원	용산구 한남동 726-180	10,100	2199-7624
9		효창	용산구 효창동 255 외1	14,700	
10	성동구	대현산	성동구 금호1가동 산37-1	8,000	2286-5674
11		금호산	성동구 금호3가동 산2-1	10,000	
12		매봉산	성동구 옥수동 436-9	10,000	
13	광진구	아차산	광진구 증곡동 143-146	10,000	450-7849
14		아차산 어울림공원	광진구 광장동 5-125	10,000	
15	동대문구	배봉산공원	동대문구 휘경동 산6-83	10,000	2127-4609
16		답십리공원	동대문구 답십리동 2-299	10,000	
17		홍릉공원	동대문구 청량리동 산1-143	10,000	
18	중랑구	용마산	중랑구 면목동 31-25	10,000	2094-2394
19		봉화산	중랑구 목동 산41-11	12,000	
20		사가정공원	중랑구 면목동 산1-9	10,000	
21	성북구	개운산근린공원	성북구 돈암동 산6-1	9,000	2241-3733
22		오동근린공원	성북구 하월곡동 산2-1	10,000	
23	강북구	오동	강북구 번동 산12	8,000	901-6954
24		북한산	강북구 미아동 산108-19	10,000	
25		오패산	강북구 번동 산20-6	10,000	
26	도봉구	반딧불이	도봉구 창동 산24	10,000	2091-3785
27		둘리	도봉구 쌍문4동 산82	13,000	
28		하늘	도봉구 방학동 산90-14	10,000	
29		꿈기움	도봉구 창3동 산194-2	10,000	
30	노원구	수락산	노원구 상계동 산155-1	13,000	2116-0547
31		영축산	노원구 월계동 산130	13,000	
32		불암산	노원구 중계동 산95-5	12,000	
33		태릉	노원구 공릉동 산223-1	10,000	
34		노원골	노원구 상계동 산59	10,000	
35	은평구	서오름	은평구 진관동 390	10,000	351-8032
36		비단산	은평구 신사동 98-46	11,000	
37	서대문구	백련산 매바위	서대문구 홍은동 산19-19	10,000	330-1544
38		인왕산	서대문구 홍제동 산1-168	10,000	
39	마포구	상암산	마포구 월드컵로42길 22	15,000	3153-9576
40		매봉산	마포구 증산로 87	10,000	

연번	관 리 청	유아숲체험원명	위치	규모(㎡)	문의처
41	양천구	신정산 우렁바위	양천구 중앙로 153	10,000	2620-3586
42		용왕산	양천구 용왕정길 19	10,000	
43		지양산 해맞이마을	양천구 지양로7길 28-29	10,000	
44		매봉산 연의골	양천구 신정3동 814	10,000	
45		신정산 계남	양천구 신정로 273-5	10,000	
46		갈산	양천구 목동남로 106-25	10,000	
47	강서구	우장산	강서구 내발산동 산19-1	8,600	2600-4289
48		평고개	강서구 방화3동 산136-6	8,000	
49		봉제산	강서구 화곡동 산41-6	10,000	
50	구로구	개웅산	구로구 개봉동 산53-3	11,000	860-2914
51		жат절	구로구 개봉동 45-2	10,000	
52		능골산	구로구 고척2동 산8	10,000	
53		개웃개웃	구로구 개봉동 산53-3	10,000	
54	금천구	베짱이	금천구 독산동 산199-1	12,000	2627-1664
55		개미	금천구 독산동 산89-7	10,000	
56	영등포구	영등포공원	영등포구 영등포본동 582-3	6,000	2670-1656
57	동작구	현충공원	동작구 상도1동 산49-36	13,000	820-1639
58		상도공원	동작구 상도동 531-15	10,000	
59	관악구	낙성대공원	관악구 봉천동 산25	10,000	879-6513
60		선우공원	관악구 신림동 산117-1	10,000	
61		삼성동	관악구 신림동 산68-2	10,000	
62		당곡	관악구 봉천동 산133-20	10,000	
63		청룡산	관악구 청룡동 산175-36	9,700	
64		대학동	관악구 신림동 산50-21	10,000	
65		인현동	관악구 봉천동 산29-3	8,500	
66	서초구	문화예술공원	서초구 양재동 200	14,000	2155-6873
67		우면산	서초구 산36-6	10,000	
68		방배근린공원	서초구 방배동 산44	10,000	
69	강남구	대모산	강남구 일원동 436-6	10,000	3423-6252
70		해찬솔	강남구 자곡동 산48-16	10,000	
71	송파구	장지공원	송파구 장지동 851	8,000	2147-3402
72		오금공원	송파구 오금동 51	10,000	
73	강동구	일자산 종달새	강동구 둔촌동 산102-4	13,000	3425-6452
74		명일공원 앨리스	강동구 상일동 산26-6	10,000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2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9.)

- 질 의 : 이번 조례는 제정안인 반면, 유아숲 운영 관련 2025년도 예산이 있음. 어떤 법령에 근거하여 예산안이 제출된 것인가. 조례 근거 없이 사업이 추진되었나
- 답 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해 왔고 국시비 예산 매칭 사업으로 추진 중임. 미리 관련 조례를 마련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면이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 발의에 적극 동의함
- 질 의 : 기존에는 국시비 매칭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오고 있는데, 금번 조례 제정으로 구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확대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구에서 정원사 양성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유아숲교육 사업과 연계 진행을 통해 활성화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은 어떤가
- 답 변 : 현재 유아숲체험원은 용역을 통해 운영 중인데, 현행법상 일반 개인은 수행이 불가능하고 산림복지전문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 면허가 있는 경우에만 입찰이 가능함

7. 토론 요지

- 상위법령 및 중앙부처 주무기관의 공식 용례와 조례 용어의 표기를 통일 하고 상위법령 규정 및 한글 맞춤법 등에 맞으며 간결한 표현으로 조문을 수정하는 수정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관련의안번호
제555호

발의일자 : 2025. 8. 29.

제안자 : 경제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상위법령 및 중앙부처 주무기관의 공식 용례와 동일하게 용어의 띄어쓰기 표기를 수정함
- 상위법령 규정 및 한글 맞춤법에 적합하고 간결한 표현으로 조문을 수정함
-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삭제함

2. 수정내용

- 상위법령 및 중앙부처 주무기관의 공식 용례에 맞도록 용어의 띄어쓰기 표기를 전부 붙여 쓰도록 수정함(제명,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2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1항 각 호, 제6조)
- 상위법령 규정에 맞추고 간결한 표현으로 조문을 수정함(안 제1조)
- 한글 맞춤법에 맞도록 조사를 넣어 조문을 수정함(안 제2조)
-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불필요한 제한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2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한다.

제1조 중 “유아 숲 교육의”를 “유아숲교육의”로, “유아 숲 교육을”을 “유아숲교육을”로, “정서를 함양하고”를 “정서 함양 및”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뜻”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아 숲 교육”이란”을 ““유아숲교육”이란”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을 “이루어지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유아 숲 교육을”을 “유아숲교육을”로, “유아 숲 교육이”를 “유아숲교육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유아 숲 교육의”을 “유아숲교육의”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유아 숲 교육의”를 “유아숲교육의”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사업추진 등) ”을 “(사업추진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유아 숲 교육”을 각각 “유아숲교육”으로 한다.

제6조 중 “유아 숲 교육을”을 “유아숲교육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p><u>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u> <u>활성화에 관한 조례안</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u>유아 숲 교육</u>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u>유아 숲 교육</u>을 통하여 유아의 <u>정서를 함양하고</u>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p> <p>1. (생 략)</p> <p>2. “<u>유아 숲 교육</u>”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림교육 중 유아를 대상으로 <u>숲에서 이루어지는 교육</u>을 말한다.</p> <p>3. (생 략)</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u>유아 숲 교육</u>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u>유아 숲 교육</u>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구청장은 <u>유아 숲 교육</u>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u>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숲교육</u> <u>활성화에 관한 조례안</u></p> <p>제1조(목적) ----- -- <u>유아숲교육</u>의 ----- ----- <u>유아숲교육</u>을 ----- 유아의 <u>정서 함양</u> 및 ----- --.</p> <p>제2조(정의) ----- --- 뜻은 -----.</p> <p>1. (원안과 같음)</p> <p>2. “<u>유아숲교육</u>”이란 ----- ----- ----- ----- 대상으로 <u>이루어지는</u> -----.</p> <p>3. (원안과 같음)</p> <p>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 ----- --- <u>유아숲교육</u> ----- ----- -- <u>유아숲교육</u>이 ----- -----.</p> <p>② ----- <u>유아숲교육</u>의----- ----- -----.</p>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원 등 유아 숲 교육 시설의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활용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③ (생략)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① ----- 유아숲교육의-----

-----.

② ~ ⑤ (원안과 같음)

제5조(사업추진 등) ① ----- 유아 숲 교육을-----

-----.

1. ----- 유아숲교육 -----

2. 유아숲교육 -----

3. 유아숲교육 -----

4. 유아숲교육 -----

5. ----- 유아숲교육 -----

②·③ (원안과 같음)

제6조(협력체계 구축) ----- 유아 숲 교육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숲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숲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 함양 및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2. “유아숲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림교육 중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지도·교육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유아숲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

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체험원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⑤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원 등 유아숲교육 시설의 조성 및 운영

2. 유아숲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활용

3.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숲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김광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55
----------	-----

발의연월일 : 2025. 8. 14.

발 의 자 : 김광심·손민기·우종혁·

노애자·이성수·이도희·

복진경·이동호·김진경·

이향숙·한윤수 의원(이상 11인)

1. 제안이유

유아기의 아동이 자연 속에서 정서적 안정과 전인적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유아 숲 교육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유아숲체험원의 조성 및 운영,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유아숲체험원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유아 숲 교육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입법예고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다음과 같다.

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
2. “유아 숲 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림교육 중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지도·교육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② 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체험원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⑤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체험원 등 유아 숲 교육 시설의 조성 및 운영
2. 유아 숲 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활용
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5.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